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-371호

##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3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30일

행정안전부장관

#### □ 인증 대상

-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
  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 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  -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  - ※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

#### □ 인증 절차



※ 1차 인증심사, 현장심사, 2차 인증심사(필요시)에 신청인 참석

#### □ 신청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2. 5. 30.(월) ~ 6. 30.(목) 18:00

○ 신청방법 :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(www.ks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(www.ksis.go.kr) 공고문에 첨부된 "신청서 저장 폴더"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(파일 업로드)

○ 신청서 등

	사 근 <del>대</del>
<u>구분</u>	서류명
	1. 신청서(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·제출)(붙임 1 참고) - (신규)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
	- (연장)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	2. 재난안전제품 설명서(붙임 2 참고)
	3.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(붙임 3 참고)
	4. 청렴 서약서(붙임 4 참고)
신청서 및	5. 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 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. 다만,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첨부서류	※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
	6.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
	7. 특허,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	8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
	9. 「산업표준화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
	1. 신청은 반드시 "제품명"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
	2.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, 등록원부,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
참고사항	3. 공동개발 기술(공동특허 포함)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"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(제품)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 서"(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)를 작성·날인하여 첨부해야 함
	4.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
	5.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
	6.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	7.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까지 신청해야 함

#### □ 추진 일정

주	ይ	내 동	3	제 2 회	제 3 회
신 청	서	제	출	5월	11~12월
신 청 서	검토 및	심사 준	- 비	6월	'23년 1월
1	차	심	사	7월	'23년 1월
현	장	심	사	8월	'23년 2월
2	차	심	사	9월	'23년 3월
예 정	공고 및	의 견 수	렴	10월	'23년 4월
인 증	서	발	급	11월	'23년 5월

<sup>※</sup>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문의처

-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(044-205-4188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(02-3460-9190, 9180, 9028)
- ※ 신청 시스템(www.ksis.go.kr) 관련 문의 :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(044-205-4189)

### 붙임 1

###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

####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[ ] ] 신청서

※ 색상이 어-	두운 란은 신청인이	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	(앞 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6개월	
	업체명 (성 명)			대표자			
	설립일			사업자등록번 (생 년 월 일			
신청인	종업원 수	명 자본금	백만원	매출액	억원 수	출액	만\$
정 보	기관유형 [ ]대 [ ]7	내기업 []중견기업 정부출연 연구원(소)	[ ]중소기 [ ]대학교	업 [ ]국공립 연 . [ ]기타	년구원(소)		
	소재지 (본사 (주소) (공장	)	[]	. [ ]. [ ]			
	제품명	,		모델명(규격), 인		!증유효기간	
	연장사유						
신청제품	매출액(전년도	실적, 해당 연도 계획)	억원	수출액(전년도 실	l적, 해당 연	도 계획)	만\$
건경제품	주 수요처						
	제품 설명(요약	<b>양</b> )					
 업무	소속			직위			
담당자	성명			연락처(전자우	펴)		
	및 안전관리 기본 같이 신청합니디	_	업 시행령	제81조의3 및 집	같은 법 시형	행규칙 제193	도의8에
					Ļ	크 월	일
		신청인 업체 대표자(성!	. —			(서명 또	는 인)
행정인	·전부장관	귀하					
첨부서류	최근 2년 이내에 는 경우 시험성적 3. 다른 법률에 따 경우 검사 또는	대한 설명서  -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 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	성능검사 자료 발급일에 대한 대하여 사용 전 자료	. 다만, 유효기간 ( 기준을 적용하지 않 선 검사 또는 검증을	연장을 신청히 는다.	구구표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선관리 기
담당 공무원	5. 그 밖에 행정인	·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- 법인등기부등본	는 자료			따라 행정안전투 장관이 정한 수	
확인사항	71 .3 73 41		<sup>년</sup> 공동이용 등	E의서			
			- 00-10 6		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\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동의함[ ] 동의하지 않음[ ]

(서명 또는 인)

### 재난안전제품 설명서

## 재난안전제품 설명서

(6쪽 중 제1쪽)

						(07 8 /117)	
	신청제품명	한글					
	201140	영문					
	O1 - 11 m4	한글					
	업체명	영문					
		한글					
	소재지	영문					
		한글					
	대표자	영문	전화번호				
	종업원 수		자본금				
	(명)		(백만원)				
	총	직전년도	총	직전년도			
	매출액 (백만원)	금년실적 및 계획	수출액 (천\$)	금년실적	및 계획		
	신청제품 매출액 (백만원)	직전년도		직전년도			
		7664	신청제품 수출액	7664			
일반현황		금년실적 및 계획	(천\$)	금년실적	및 계획		
	<u></u>						
	생산품						
	주 거래처						
	1 21-424						
	신청제품						
	주 수요처						
	동종업체	국내					
	55HM	국외					
	신청제품	국내					
	주 경쟁업체	국외					
	인증실적	[ ] 신기술/신제품 인증	[ ] 우수조달제	<u>-</u> 古	[ ] 기E	타 기술인증	
	LOEÄ	인증명(제품명)					
	동일 품목의						
	기 인증 여부						

(6쪽 중 제2쪽)

		(0 <del>4</del> 5 ^	네스득丿
	용도		
신청제품 설 명	제품의 구조		
	제품 작동원리		
	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		

						(6쪽 중 세3쪽)
	기존 제품의	기존 제품의 문	데 점			
신청제품	문제점 및 개선내용	개선방법(핵심기	술 및 개선결과)			
설 명			평가항목	신청제품	국내 기존제품	국외 기존제품
		제품 주요성능				
	개발기술					
	핵심내용	국내 경쟁제품과의 기술성 비교				

					(6≅	· 중 세4쪽)
	개발방법					
	개발기간					
	개 발 비		천원(자	체자금	천원)	
			%(원가금	액대비)		
	국산화율	주요 수입금	<del>-</del>			
		구분 (등록여부)	등록 또는 출원번호(일자)	제목	등록 또는 출원 핵심내용 요익	
신청제품	신청제품과	특허(출원)				
개발이력						
	관련된 산업재산권					
	보유 현황					
		특허(등록)				
		7 ~1(0 7)				

(6쪽 중 제5쪽)

							<u>`</u>	1 - 17
	제품	뚴명						
	모딩	델명						
	기입	엄명						
	기준							
	작 참고	·성 .자료						
	시험	일자						
	시험	장소						
	시험	방법						
	시험	시료						
				신청	제품 인증실적			
신청제품 평가결과		[ ] 술적용제	품 신제		[ ] 우수조달제품	[ ] 성능인증		[ ]
(제품 평가기준			-1-1-D	ᇳᅴ미미		평가	결과	
및 평가결과)	번호	뜅	가항목	평가방법	인증기준	신청제품	경쟁제품	비고

(6쪽 중 제6쪽)

		(65	ਠ ੶	제6쪽)
	상품 · 기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			
	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			
	불합격시의 조치계획			
	해 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			
	기타 품질 경영 사항			

###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

###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청	업체명					
기업	담당자	이름		직함		
716	000	핸드폰		이메일		
	제품명					
	모델명					
	신청제품	□ 전기·	전자 □ 정보통신	□ 7	' 계·소재	
	기술분야 (택 1)	□ 화학·	생명 □ 건설·환	경 □ 0	네너지	
	기술 핵심단어					
	(5개 이상)					
신청 제품	인증대상(품목)	대분류		중분류		
세곱	유형 (복수 기재 가능)	용도				
	※ 참고1 참조	근거	※ 성적서 번호 등		1	
	재난 및 안전사고	대분류		중분류		
	유형	세부유형				
	(복수 기재 가능) ※ 참고2 참조	근거	※ 성적서 번호 등			
		검토항목		적합여부 (○ / X)		· - - - 등 별첨)
	제품 출시를 위한	필수요건(강제				
			합 / 미획득 : 부적합)			
71 🖽	특허, 지적재산권	_				
기본	(침해하지 않음 :					
검토 항목	선정제품의 재단인( (존재하지 않음 :		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 하 · 브저하)			
앙축			<u>의 · 구극百/</u> 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			
	했는지 여부	<u> </u>				
	(특정모델 제시 :	적합 / 포괄직	덕 제시 : 부적합)			
	신청제품이 제품의	범위에 속하	는지 여부			
	(제품에 해당 : 적	합 / 소프트워	웨어 등 : 부적합)			
÷J⊼L	현장심사 주소	※ 신청제품	제조 사업장, 제조공장	또는 설치정	당소	
현장 · 품질	표지거어 레게	[ ] 있음 (	인증기간 : 년	월 일	까지)	
항목	품질경영 체계	[ ] 1809	9001 [ ] IATF16949	9 [ ] 품질	일경영체계 설	명자료(자체)
07	구축여부	[ ] 없음	'	'		
「재닌	! 및 안전관리 기본 <sup>!</sup>	 법」 제73조의	4, 같은 법 시행령 제81	  조의3 및 [	는은 법 시행규	 }칙 제19조의8
에ㄸ	나른 재난안전제품 신	l청 관련 사전	검토표를 제출합니다.			
					년	월 일
		신청인	인 업체명 -			
			자(성명)		(서	명 또는 인)
<u></u>	행정안전부장관 귀	하				

### 청렴 서약서

# 청렴 서약서(신청인)

업 체 명 :				
대 표 자 명 :				
신청제품명 :				
본 사(인)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 협조 하겠으며,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당하겠습니다.				-
1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(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,				
2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.	여 담당 직원 달	및 심사 위	원에게 어	떠한
		년	월	일
	업 체 명 :			
	대표자명 :		(서명)	
행정안전부장관 귀하				

## 참고 1

##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(품목) 유형

대분류	중분류	품목별 정의
	1-1. 재난예측 제품	기상 및 기후변화,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
1.예측.진단	1-2. 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
	1-3. 비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외 전기, 가스,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·점검하 는 제품
2. 감지	2-1. 모니터링 제품	화재, 홍수,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
2. 6/1	2-2. 안전센서 제품	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
	3-1. 개인보호구 제품	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
3. 대비	3-2. 시설물보강 제품	노후,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·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 치되는 제품
4. 대응	4-1. 확산방지 제품	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	4-2. 위험인자해소 제품	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 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
r [	5-1. 비상탈출 제품	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
5. 대피	5-2. 대피안내 제품	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
	6-1. 해상구조 제품	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6. 구조	6-2. 구조물 내 구조 제품	빌딩, 지하공간, 터널, 운송수단 등 구조물(시설)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	6-3. 야외구조 제품	산악사고, 산불,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7. 복구	7-1. 시설물복구 제품	주택,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/. ≒⊤	7-2. 구호 제품	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
8. 기타	8-1. 기타 재난안전 제품	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

## 참고 2

##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

대분류	중분류	세부 유형
1. 자연재난	1-1. 풍수해	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대설, 우박
	1-2. 기상재난	가뭄, 낙뢰, 폭염, 한파, 황사, 오존
	1-3. 지질재난	산사태·급경사지 붕괴, 지진, 지반침하(싱크홀), 토석류, 화산폭발
	1-4. 해양재난	적조, 조수, 지진해일, 파랑, 폭풍해일, 풍랑, 해안침식
	1-5. 우주·기타재난	조류대발생, 우주재해(소행성 등)
2. 사회재난	2-1. 감염병·전염병	감염병, 가축 등 전염병
	2-2. 교통사고	도로교통, 해양교통, 철도교통, 항공교통 재난·사고
	2-3. 화재·폭발	산불, 화재, 가스사고, 폭발사고
	2-4. 화학물질 사고	방사능사고, 유해화학물질 사고
	2-5. 미세먼지	발전부문, 산업부문, 수송부문, 생활부문 미세먼지
	2-6. 환경오염	수질오염, 해양오염, 토양오염
	2-7. 시설물 사고	건축·시설물, 에너지 기반시설, 폐기물 처리시설, 용수 기반시설 사고
	2-8. 정보·전산 사고	금융전산사고, 사이버 테러
	2-9. 통신시설 사고	유선 통신설비, 무선 통신설비 사고
3. 안전사고	3-1. 산업재난사고	농어업 사고, 사업장 산재, 식품사고, 의약품 사고, 의료기기 사고
	3-2. 치안	범죄, 안전취약계층 사고, 자살, 전시테러
	3-3. 생활·레저 사고	승강기, 전기·가스, 등산·레저, 물놀이, 생활제품, 연안 사고
4. 기타	4-1. 기타 재난·사고	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